

서울특별시 국치일 등 국기의 조기계양 조례안

검 토 보 고

1. 발의자 및 발의경과

- 의안번호 : 1071
- 발 의 자 : 김인호 의원(찬성자 12명)
- 발의일자 : 2016년 3월 16일
- 회부일자 : 2016년 3월 16일

2. 제안이유

- 일본 정부와 우익 인사들의 망언과 역사왜곡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치일 등의 아픈 역사를 되새기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국기의 조기계양을 권장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국기의 조기계양 정의(안 제2조)
- 나. 국기의 조기계양일(안 제4조)
- 다. 시장 및 교육감의 책무(안 제5조, 안 제6조)
- 라. 조기계양 권고(안 제7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대한민국국기법」, 「대한민국국기법시행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입법예고(2016.3.31.~4.7)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가. 제정안의 입법취지 및 필요성 검토

- 본 제정안은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1)에 따라 국치일 등에 국기를 조기(弔旗) 게양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조문체계 및 주요 내용>

조문체계	주요 내용
제1조(목적)	- 국기의 조기(弔旗)게양에 필요한 사항 규정
제2조(정의)	- 국기, 국치일, 현충일 등의 정의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이외에 이 조례를 따름.
제4조(국기의 조기게양일)	1. 대한민국 국치일(國恥日)(매년 8월 29일) 2. 현충일(매년 6월 6일) 3. 국가장기간 4. 그 밖에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제5조(시장의 책무)	- 국기의 조기게양을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
제6조(교육감의 책무)	- 국기의 조기게양을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
제7조(조기게양 권고)	- 국기 조기게양을 권고

- 본 제정조례안은 국치일 등에 국기의 조기게양을 통하여 국치일 등을 되새기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결집시키며, 국기의 조기게양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광주광역시(국치일 등 국기의 조기게양 조례)와 제주도(4·3희생자추념일 등 국기의 조기게양에 관한 조례)에서 유사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참고자료 1 참조).

1)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 및 국군의 날
3.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기간
4.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5.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②~⑥ 생략

○ 다만, 본 조례는 국기의 조기게양일에 대해서만 규정하여 상위법에서 위임한 국기의 게양일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하겠음.

○ 따라서 「대한민국국기법」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되어 있는 국기 관련 사무²⁾를 모두 포함하기 위해서는 표준조례안*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이미 회부된 국기선양 지원 조례안과 동 조례안을 통합하는 방안에도 대해서도 검토해볼 여지는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참고 2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표준안)」

나. 세부 내용 검토

1)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등(안 제1조~제3조)

○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국기에 대한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다만, 정의 규정에 “조기”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 “조기”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살펴볼 여지는 있다고 하겠으며, “국가장기간”의 경우도 상위법의 규정에 맞게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기간”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 조기는 조의를 표하기 위해 깃봉에서 기의 한 폭만큼 내려서 다는 국기를 말함.

2) 대한민국국기법

제5조(국기의 존엄성 등) ① 삭제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호 생략

5.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2) 국기의 조기게양일(안 제4조)

- 안 제4조는 국기의 조기 게양일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치일 등의 아픈 역사를 되새기고, 현충일 등을 잊지 않고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국기의 조기 게양일 : 대한민국 국치일(國恥日)(매년 8월 29일), 현충일(매년 6월 6일), 국가장기간, 그 밖에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3) 시장과 교육감의 책무 및 조기게양 권고(안 제5조~제7조)

-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시장과 교육감으로 하여금 국기의 조기 게양을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대한민국국기법」 제5조제2항³⁾의 책무를 구체화 시킨 것으로 보이며,
- 안 제7조는 시장이 공공시설 외 대형건물이나 국기게양대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 및 부지 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국기의 조기게양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전문위원 : 김태한
입법조사관 : 신정희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1

전국 광역자치단체 국기 관련 조례 제정 현황('16.3월)

- 17개 중 11개 광역자치단체가 국치일 국기게양 내용포함 조례제정·시행중임.
 ※ 표준조례안(행정자치부) :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연 번	구 분	조례명				비고
		표준안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국기선양(국기사랑) 지원 조례	국치일 등 국기의 조기게양 조례	
	계	7	3	3	2	
1	서울특별시					
2	부산광역시					
3	대구광역시	○				국치일 명시
4	인천광역시	○				국치일 명시
5	광주광역시			○ (국기사랑 지원 조례)	○ (국치일 등 국기의 조기게양 조례)	국치일 명시
6	대전광역시		○			국치일 명시
7	울산광역시	○				
8	세종특별자치시			○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9	경기도		○			국치일 명시
10	강원도		○			국치일 명시
11	충청북도	○				국치일 명시
12	충청남도					
13	전라북도	○				국치일 명시
14	전라남도	○				국치일 명시
15	경상북도			○ (대한민국 국기 사랑 지원 조례)		국치일 명시
16	경상남도	○				
17	제주특별자치도				○ (4·3희생자추념일 등 국기의 조기게양에 관한 조례)	국치일 명시

참고 자료 2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표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국기” (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날
2. 그 밖에 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제4조(국기선양 사업)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
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시민 국기달기 운동
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①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국기를 보급할 수 있다

제6조(포상)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